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158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.04.26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6년 4월 19일 강구덕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같은 해 4월 19일 유동균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해 4월 20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,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,
-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,
-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(안 제5조제1항제14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신설).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(준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)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(준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)

제6조제3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산식”을 “계산식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호 중 “서기 약간 명을 두되”를 “1명 이상의 서기를 두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며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21조제9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2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 할”을 “위촉 해제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치료를 요하는” 및 “해외”를 각각 “치료가 필요한” 및 “국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해촉을”을 “위촉 해제를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<u>범위 안에서</u>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</p> <p>2.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<u>범위 내에서</u>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<u>범위 안에서</u>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</p> <p>5.~13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5조(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5.~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(<u>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</u></p>

<p><u>14.</u>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<u>선</u>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3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5.</u>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</p>	<p><u>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)</u></p> <p>15. 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범위에서</p> <p>-----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(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)</p> <p>6. -----</p>
<p>제6조(총괄계획가의 위촉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,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<u>대</u> 하여는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총괄계획가의 위촉 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대</p> <p>해서는 ----- 범위에서 -----</p> <p>-----.</p>
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<p>제8조(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,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.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<u>산식</u> 중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8조(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계산식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사업협의회 구성운영)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·운영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<u>서</u></p>	<p>제9조(사업협의회 구성운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1</u></p>

<p>기 약간 명을 두되,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되며, 서기는 사업협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된다.</p> <p>5.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6. (생략)</p>	<p>명 이상의 서기를 두되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----- 대해 서는 ----- 범위에서 -----.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</p> <p>①~⑧ (생략)</p> <p>⑨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⑩ (생략)</p> <p>⑪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</p> <p>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</p> <p>3.~4. (생략)</p>	<p>제21조(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</p> <p>①~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----- 대해서는 ----- 범위에 서 -----.</p> <p>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⑪ ----- 위촉 해제할 -----.</p> <p>1. ----- 치료가 필요한 ----- 국외 -----</p> <p>2. ----- 위촉 해제를 -----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

제2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- ① (생략)
-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.
- ③~④ (생략)

제2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---- 따라 -----.
- ③~④ (현행과 같음)